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

2021. 5. 13

주식회사 광주신세계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건설, SI(시스템통합), 광고, 물류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품 또는 용역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심의 및 적정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, 책임)

-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해 검토, 심의하도록 한다.
- ②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이사회 보고의무는 광주신세계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3 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내부거래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,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, 수의 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,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 할 수 있다.
- ⑤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주체는 이사회에 한정하도록 한다.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신세계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심의하되,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권한만 갖을 뿐, 그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월 1 회 개최한다. 단,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회의성립)

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,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동시행령 제 3 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건설, SI(시스템통합), 광고, 물류 분야에 대하여

- ① 단일 건별 계약금액 또는 연간 매출액 50 억원 이상 신규 수의계약 중 상품 또는 용역거래
- ② 기타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상품 또는 용역거래

한편 내부거래위원회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【 수의계약 사유 】

- 1) 천재지변,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,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긴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경쟁입찰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- 2) 관련 시장의 독점,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존재 등으로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- 3) 단일 건별 계약금액 혹은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의 거래 등 경쟁입찰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
- 4) 재무, 인사정보 등과 같은 기업현황과 관련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
- 5) 고객 주민번호, 연락처, 구매내역, 포인트, 마일리지 현황과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
- 6) 경쟁입찰, 직접발주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때마다 연관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
- 7) 업무기능의 확장으로 기존 업무와의 연동 및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
- 8) 단계별로 구축되는 개발에 일관성 및 경영노하우를 보장하고자 할 경우
- 9) 기 개발 또는 구축된 전산시스템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등 전문적 지식에 의한 검증과 지속적인 운영, 관리가 필요한 경우
- 10) 다수의 협력회사로부터 납품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력 등의 추가 운영이 불가피하여 지정업체로의 통합 위탁이 효율적일 경우
- 11) 출점정보, 매장구조, MD배치 등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
- 12)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일정 지연, 공사비 증가 등의 상황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
- 13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상품·서비스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
- 14)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 11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)

-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존하며,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보존한다.

제 13 조(간 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경리팀장이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4 조(독립성확보)

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5 조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

